

## 원가계산용역기관 및 공인원가분석사 법령으로 상향 조정

- ◆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과 국가공인원가분석사에 관한 사항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으로 상향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(안건 :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)
- 현재는 계약예규에 규정되어 있으나,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법령에 상향규정하기로 함
- ◆ 이에 따라 용역기관과 그 주요 구성원인 공인원가분석사의 위상이 제고되고 또한 책무가 더욱 막중하게 되어, 한국원가분석사회 회원인 공인원가분석사의 전문성 제고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음

### <참고> 경제장관회의 안건내용(발취)

- **[현황]**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
  - 그러나, 현행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\*은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는데 한계
    - \* 계약예규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규정
- **[개선]** 원가계산용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
  - \* (현행) 원가분석사 또는 원가분석업무 경력자 등
  - (개선안) 공인회계사, 원가분석사 또는 원가분석업무 경력자 등
  -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상향
  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, 계약예규 개정

경제관계장관회의  
17-10-4

공개

---

#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

---

2017. 12.

관계부처 합동

# 순서

I. 추진 배경	1
II. 공공조달 혁신방향	3
III. 세부 추진과제	5
1. 혁신성장 지원	5
2. 사회적가치 실현	8
3. 공정조달 강화	11
IV. 향후 계획	16

# I. 추진 배경

## 1. 현황

◇ 공공조달 제도는 제도적 확산효과 및 공공조달 시장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

□ 공공조달 제도는 공공부문이 민간으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필요한 입·낙찰제도 및 계약조건 등을 규율

○ 재정집행에 있어서 지출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서 지출의 공정성·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용

○ 입찰참여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높아 주요 정책목표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기능

□ 국내 공공조달 시장은 117조원 규모(GDP대비 7.1%, '16년 기준)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

○ 입찰참여기업도 35만개 업체 수준('16년 기준)으로 매년 증가

\* 조달청 입찰참가업체 추이: ('12) 24.4만개 → ('14) 29.3만개 → ('16) 34.8만개

- 중소기업 구매분이 86조원 규모(전체 공공조달의 74%, '16년 기준)

< 조달시장 규모 추이 >



조달규모 ('12) 106.3조원 ⇨ ('14) 111.5조원 ⇨ ('16) 116.9조원

참여업체 ('12) 24.4만개 ⇨ ('14) 29.3만개 ⇨ ('16) 34.8만개

## 2. 문제점

- 판로지원 대상 등을 납품실적, 인증보유 등 스펙위주로 결정함에 따라 신생·혁신기업 지원에 한계
  - 실적위주 평가로 벤처기업 등 신생업체의 조달시장 진입이 어려움
  - 판로지원 대상도 기술인증 등 기존 기술 중심으로 구축되어 기술발전 속도 등 최근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 곤란
- 현행 조달제도는 재정효율성 중심으로 운용\* 되어 사회적 가치 실현 지원에 한계
  - \* (예시) 종합심사낙찰제 점수 구성: 수행능력(50), 가격(50), 사회적책임(가점 1)
  - 사회적 가치가 입낙찰시 평가요소의 일부로 반영되는데 불과하고, 제도 전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
- 입찰자 상호간 공정경쟁은 중시되어 왔으나, 발주기관·원·하도급자 등 수직적인 관계의 공정성 확보는 미흡한 측면
  -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 및 하도급업체의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증대

⇒ 공공조달 제도의 혁신을 통해 창업·벤처기업 활성화 등 혁신 성장 지원·사회적 가치 실현·공정경제 구현 등 달성 필요

### < 참고: 공공조달제도 관련 해외동향 >

- ◇ EU 등 주요국가는 조달제도를 재정효율성 제고와 함께 혁신경제 구축, 경제·사회적 후생 등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중

#### [혁신조달]

- (EU, 영국, 캐나다) 상용화 되지 않은 혁신제품을 정부기관이 우선 구매·사용하고,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여 혁신제품의 상용화 지원

#### [사회적 가치]

- (영국) 공공계약 체결시 경제적, 사회적, 환경적 후생을 고려할 것을 명시한 '공공서비스법' 제정('13)

## II. 공공조달 혁신방향

◆ 혁신성장 지원, 사회적가치 실현, 공정조달 강화 등 공공조달 제도의 혁신을 통해 「사람중심 경제성장」 구현

- ① **[혁신성장 지원]** 창업·벤처기업, 우수기술기업이 공공조달 시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혁신형 공공조달 제도 도입
  - 조달시장이 성장사다리가 되도록 창업·벤처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판로확보를 지원
  -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물품·서비스를 개발·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조달제도 마련
- ② **[사회적가치 실현]** 사회적 경제기업을 우대하고, 적정임금 지급, 근로처우 개선 등 근로계약 관련 사회적 가치 실현을 지원
  - 사회적경제기업 우대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
  - 공공노무 근로자의 임금지급 개선 및 근로조건 보호강화 등을 통해 취약계층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
- ③ **[공정조달 강화]**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원-하도급자간 상생을 유도하여 공정경제 실현을 뒷받침
  -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실천수준 평가 강화 등 공공조달 참여자간 상생 기반 마련
  - 불공정한 계약조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 절차의 실효성 제고

## 정책 목표

「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경제」 구현



과 제	추진 방안
1. 혁신성장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진입장벽 해소 등을 통해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초기시장 제공</li> <li>• 공공조달을 통해 신시장을 창출토록 혁신형 조달제도 도입</li> </ul>
2. 사회적가치 실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·낙찰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실현 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우대</li> <li>• 공공노무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등 근로계약 관련 사회적가치 실현</li> </ul>
3. 공정조달 강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공공조달 참여자간 상생 기반마련</li> <li>•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행태 방지</li> <li>• 분쟁조정 등 사후 구제절차 실효성 제고</li> </ul>

### Ⅲ. 세부 추진과제

#### 1 혁신성장 지원

##### (1) 중소·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성장사다리 제공

###### ① 소규모 계약에 대한 실적제한 폐지

- **[현황]** 창업·중소기업이 주로 참여하는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도 실적제한 경쟁이 가능

\* 계약목적물의 1/3배 이내, 필요시 1배까지 실적제한 허용

- **[개선]** 창업·중소기업의 공공조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.1억원\* 미만 소규모 계약에 대하여는 실적제한 폐지

\* 정부조달협정(GPA)에 따른 조달시장 개방대상 금액(13만 SDR)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

###### ② 소규모 물품계약에 대한 최저가낙찰제 폐지

- **[현황]** 소규모 물품 구매계약(2.1억원 미만)\*에 대하여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여 영세업체의 부담 가중

○ ('15년 공공조달 전수조사) 37개 공공기관 141개 사업에서 예정가격 50% 미만의 과도한 저가투찰 사례(실적 쌓기를 위한 10원입찰 등) 발생

\* 공사·용역 및 2.1억원 이상 물품계약은 적격심사 또는 종합심사낙찰제 적용

- **[개선]** 영세업체가 적정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.1억원 미만 소규모 물품구매계약을 적격심사제로 전환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

### ③ 창업·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

- **[현황]** 창업·벤처기업이 초기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, 공공조달시장의 경우에도 지원 미흡
  - **[개선]** 국가·공공기관이 우수 기술을 보유한 창업·벤처기업 제품을 집중구매토록 조달제도 개선방안 마련
    -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물품조달시 창업·벤처기업 제품 집중구매제도 도입
      -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도 상향 유도(현행 50% 의무 → 70% 수준)
    - 창업·벤처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1억원 미만 물품·용역계약에 대한 제한경쟁 허용
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, 계약예규 「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」 개정

### ④ 중소·벤처기업의 입찰참여 부담 경감

- **[현황]** 제안서 작성비용, 실적발급 절차 등 입찰참여를 위한 비용과 절차가 중소·벤처기업에 부담으로 작용
  - 용역계약 등의 경우 제안서 제작비용이 과다하게 소요
  -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온라인 계약실적 발급시스템이 없어 실적발급을 위해 발주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 발생
- **[개선]** 입찰참여 중소·벤처업체 비용 경감을 위해 제안서 제출 방법 및 실적발급 시스템 개선
  - 입찰자의 제안서는 전자적 제출을 원칙으로 규정
    - \* 전자파일 제출이 곤란한 경우(예 : CAD 파일 등)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제출하게 하여 방문제출을 최소화
  - 계약실적을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토록 의무화

※ 조치사항: 계약예규 「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」 등 개정

## [2] 우수기술기업 판로지원 강화

### ① 창업기업 등의 우수 R&D와 공공구매 연계성 강화

- **[현황]** 창업기업이 R&D사업을 통하여 신제품 개발에 성공해도 판로 확보가 어려움
    - 현재 중기부가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수의계약제도를 운영 중이나 구매확산 효과가 미흡
      - \* 중기부 R&D사업에 한정, 사전구매를 약정한 수요기관만 수의계약
  - **[개선]** 창업기업 등의 신기술·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강화를 위해 우수 R&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 완화
    - \* (현행) 중기부 R&D에 한해 기술개발전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 가능  
→ (개선) 모든 국가 R&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 가능
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

### ②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

- **[현황]** 현행 공공조달은 기성제품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 부재
    - 발주기관보다 민간의 기술·지식이 월등한 혁신기술 분야에서는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목적물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 필요
  - **[개선]**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혁신적 제품·서비스의 개발 및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\*의 입찰제도 도입
    - (절차) ① 발주기관은 조달목적·주요기능만 제시하고, 구현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 → 발주기관-업체간 협의를 통해 제안서 보완완성 → 제안서를 평가,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가 낙찰
- \*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, EU·영 등에서 운용중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

## 2

## 사회적 가치 실현

### (1) 사회적 가치 실현기업 지원

#### ①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

- **[현황]** 사회적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사회적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)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참가시 인센티브 미흡
    -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만 가산점 운영
  - **[개선]**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입찰시 가산점 및 수의계약 제도 도입
    - 사회적기업 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입찰시 가산점 부여
    - 취약계층을 30%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허용(5천만원 이하 계약)
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, 계약예규 「적격심사 기준」 개정

#### ② 입찰시 사회적가치 심사항목 확대

- **[현황]** 공공조달 입찰시 심사항목에 사회적가치 관련 항목이 부족하고 다양하지 못함
    - \* 신규채용, 고용탄력성 등은 심사하나, 근로환경 등은 미심사
    - PQ·적격심사의 경우 사회적가치 항목을 신인도내에서 타항목과 합산 심사하여 타항목 점수획득시 사회적 가치 유인효과 감소
  - **[개선]** 사회적가치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할 수 있도록 심사항목 확대 반영
    - 고용유지, 근로환경(예: 모성보호) 등 심사항목 추가
    - PQ, 적격심사에서도 사회적가치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심사
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, 계약예규 개정

## [2] 근로계약 관련 사회적가치 실현

### ① 노무용역 적정임금 지급 기반 마련

- **[현황]** 청소·경비 등 노무용역 계약의 체결·집행이 예산절감 위주로 이루어져 적정임금 확보에 한계
  - 고용부 지침으로 노무용역에 대한 노무비 산정 및 임금지급 수준 등을 규정\*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미흡
    - \* (예정가격 산정) 시중노임단가 반영, (임금지급) 시중노임단가 x 낙찰률 이상 지급
  -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금액 증액 근거가 없어 2차년도 이후에도 1차년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
    -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(16.4%) 감안시, 최저임금이 내역서에 계상된 임금(시중노임단가 x 낙찰률)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
- **[개선]** 노무용역 근로자에 대해 적정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무비 산정 및 계약금액 조정 제도 개선
  - 노무비 산정 관련 고용부 지침 주요내용을 계약예규에 명시
  - 노무용역 근로자가 2차년도 이후에도 적정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계약금액의 시중노임단가 연동제도 도입
    - \* (현행) 다년도 계약의 경우 2차년도 이후에 대한 노임 지급 규정 부재  
→ (개선) 매년 시중노임단가 인상에 연동하여 노임을 증액 지급
    - 2차년도 이후 최저임금 하회분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토록 계약금액 조정 근거 신설
      - \* (1차 조정) 시중노임단가 연동 계약금액 조정 → (2차 조정) 최저임금 하회분 추가 조정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,  
계약예규 「정부입찰·계약집행기준」 개정

## ② 기초 고용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도입

- **[현황]**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고용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 미흡
  - **[개선]** 최저임금 위반·상습임금체불 등에 대한 제재 신설
    - '17년 말까지 입찰시 감점제도를 도입(계약예규 개정사항)하고, 입찰참가자격 제한 근거 마련(국가계약법 개정사항)
- ※ 조치사항: 계약예규 「적격심사기준」 등 개정  
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 제출

## ③ 노무용역에 대한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확대 적용

- **[현황]** 공사계약의 경우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를 운용중이나 노무용역 분야에는 적용되고 있지 않음
    - \* 계약금액 중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지급여부를 발주기관이 확인
  - **[개선]** 노무용역 분야에 대하여도 노무비 전용계좌 제도 확대 적용
- ※ 조치사항: 계약예규 「용역계약 일반조건」 개정

## ④ 근로조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

- **[현황]** 노무용역 입찰시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, 위반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(1개월)
    - 다만,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고용노동부 지침 및 개별 발주기관의 세부 기준에 규정되어 실효성 미흡
  - **[개선]** 노무용역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제출의무와 내용을 계약법규에 명시
    - \* 근로조건 내용: ① 임금 지급수준(시중노임단가 x 낙찰률 이상), ② 고용 승계 ③ 퇴직금, 4대보험 지급, ④ 포괄적 재하청 금지 등
- 근로조건 이행계획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강화(1개월→3개월)
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등 개정

### 3

## 공정조달 강화

### (1) 하도급·지역업체 등 상생기반 마련

#### ① 공정거래 실천수준 평가 강화

- [현황]** 낙찰자 선정시 공정거래 실천항목도 평가\*하나 타 항목과 합산 평가(가점)하여 실효성이 크지 않음
- [개선]** 공정거래 평가를 타 신인도 항목과 분리평가(PQ, 적격심사)하고, 공정거래 항목을 가점에서 배점으로 전환 검토

※ 조치사항 : 국가계약법 시행령, 계약예규 등 개정

#### ② 지역제한입찰 공사계약 대상 확대

- [현황]** 소규모 공사(종합공사 80억원 미만, 전문공사 7억원 미만)에 대하여는 지역업체만 입찰참여를 허용하는 지역제한입찰 운용
- [개선]**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전문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10억원까지 확대(전문공사의 발주건수의 80% → 90%수준)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

#### ③ 하도급대금 적정성 평가 강화

- [현황]** 현재 지급예정인 하도급금액이 입찰금액중 하도급금액의 82% 미만인 경우 실질적으로 낙찰 배제(감점 대상)
- [개선]** 하도급대금이 i) 입찰금액중 하도급금액의 82% 미만인 경우 + ii) 예정가격중 하도급금액의 60% 미만인 경우에도 낙찰배제

※ 조치사항: 계약예규 「적격심사기준」 개정

## [2] 발주기관-계약상대자간 공정성 제고

### ① 지체상금을 합리화

- **[현황]** 지체상금률\*이 높고, 장기간 지체를 할 경우에도 상한이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

\* 계약금액 대비 매 1일당 공사 0.1%, 물품 0.15%, 용역 0.25%  
연율로는 공사 36.5%, 물품 54.8%, 용역 91.3% 수준

- **[개선]** 최근 금리수준, 해외사례 및 타 법령사례(가산세 등) 등을 고려하여 지체상금률을 연 20%~30% 수준으로 인하

-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상한제(예: 계약금액의 30%) 도입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

### ② 공공기관 계약특례 제도 개편

- **[현황]** 공공기관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, 국가계약법과 다른 계약규정 운용을 허용하는 계약특례제도 운용(기재부 승인사항)

- 대부분 특례가 일몰규정이 없어 정책환경이 변화하더라도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 불합리한 규제\*로 작용할 소지

\* 예시: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·일반관리비 증액 불인정 등

- **[개선]** 개별 특례를 최소화하고, 수개 기관에 공통 적용되는 특례는 공통 기준을 마련

- 승인 후 일정기간(예시: 5년)이 경과한 특례는 일괄 재검토하여 필요특례에 한하여 일몰기간을 부가하여 재승인

- 공공기관 및 사업 유형별로 통일된 계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

※ 조치사항: 기존특례 검토 및 재승인, 공통 계약기준 마련

### ③ 부당원가산정에 따른 피해방지

- **[현황]** 일부 발주기관의 경우 공사비를 계약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하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 공사를 발주
  - 발주기관이 산정한 공사비를 신뢰하고 수주하였다가, 추후 계약 금액 과소를 이유로 계약 포기시 입찰제한을 받는 사례 발생
- **[개선]** 발주기관이 공사비를 과소하게 산정하여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
  - 과징금 부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공사비가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입찰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
  - 영세·중소업체가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단가책정 기준\*을 입찰공고시 명시토록 의무화

\* 품셈·노임 등 주요단가의 적용기준, 일반관리비율, 이윤율 및 제비율 등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

### ④ 원가계산용역기관 역량 강화

- **[현황]**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
  - 그러나, 현행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\*은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하는데 한계

\* 계약예규에서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 규정
- **[개선]** 원가계산용역 전문성 강화를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가 풀을 확대하고 전문성 요건을 강화
  - \* (현행) 원가분석사 또는 원가분석업무 경력자 등
  - (개선안) 공인회계사, 원가분석사 또는 원가분석업무 경력자 등
  - 원가계산용역기관 설립요건을 시행규칙으로 상향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규칙, 계약예규 개정

### (3) 계약상대자의 권리구제 강화

#### ① 분쟁조정제도 활성화

- **[현황]**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분쟁조정제도 운용 중
  - 그러나, 분쟁조정 실적의 실효성이 미흡\*하고 조정대상도 협소\*\*하여 활용도는 낮은 상황
    - \* 일부 발주기관은 조정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조정결과 수용을 거부
    - \*\*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, 지체상금 분쟁 등이 조정대상에 미포함
- **[개선]** 발주기관이 조정결과 수용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토록 조정결과에 대한 검토절차 등 마련
  - \* (예시) ① 수용거부시 발주기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 
② 수용거부시 거부이유 및 심급별 재판결과를 감사원에 송부
  - 분쟁조정 대상에 공공기관의 계약금액 조정, 지체상금 분쟁 추가
    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, 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개정

#### ② 불공정 계약조항 심사제도 도입

- **[현황]**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체결시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부가하여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는 사례 발생
  - 불공정한 계약조항은 무효이나, 실제로는 불공정성 및 무효여부는 소송을 통해서만 판명
- **[개선]** 조달참여업체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가 개별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을 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
  - 발주기관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 심사결과 준수 의무 부과
    - 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

### ③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

- **[현황]** 책임이 경미한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시행 중('13.6월 시행)
  - 그러나, 과징금 대체 요건의 명확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실제 적용가능성은 낮은 수준

<과징금 대체 요건 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2)>

- ① 위반행위의 원인이 천재지변에 기인
- ② 국내·국외 경제 사정의 악화 등 급격한 경제 여건 변화
- ③ 발주자의 계약내용 변경, 발주자로부터 받은 자료의 오류 등
- ④ 공동계약자, 하수급인 등 관련 업체에도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경우
- ⑤ 입찰의 공정성과 계약이행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훼손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시 위반행위를 할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

- 과징금 부과금액도 낮아 발주기관에서 과징금 대체를 기피\*

\* '13.6월 이후 과징금 부과건수는 6건에 불과(같은 기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건수는 약 3,000여건)

- **[개선]** 과징금 대체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부과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

- 현행 과징금 대체요건 규정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**요건의 명확성 제고**

\* (예시) 계약금액의 오기 등 명백한 단순착오로 가격을 잘못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등

- 대체요건 충족시 과징금 부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토록 명시

- 과징금 부과금액이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형평성이 유지되고 적정한 수준의 금액이 부과되도록 요율 조정

\* 예시: (현행) 책임경미 10% → (개선안) 책임경미 15%

※ 조치사항: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,

국가계약법 개정안 국회제출

## IV. 향후 추진계획

### □ 계약예규 개정사항은 2018.1월 시행

- 중소·벤처기업 입찰참여 부담경감, 노무비 전용계좌 확대, 하도급 대금 적정성 평가 강화 등

\* 공공기관 계약특례 제도개편은 2017.12월에 착수, 기관협의를 거쳐 2018.3월말까지 완료

### □ 국가계약법 시행령·시행규칙 개정사항은 2017.12월중 입법예고, 2018년초 개정·시행

- 소규모 실적제한 및 최저가 낙찰제 폐지, 창업·벤처기업 집중구매 제도 도입, 우수 R&D와 공공구매 연계 강화, 경쟁적 대화방식 도입,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

- 노무용역 적정임금 지급기반 마련, 근로조건 이행계획 제출 의무화, 지역제한입찰 대상 확대, 지체상금률 합리화, 원가계산 용역기관 역량 강화, 분쟁조정제도 활성화 등

\*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선낙찰제, 일자리 창출 등 평가항목 확대, 공정 거래 실천수준 평가강화는 연구용역을 거쳐 2018년 상반기 시행

### □ 국가계약법 등 법률 개정사항은 2017.12월중 입법예고 추진, 2018.3월말 국회 제출

- 기초 고용질서 위반행위 제재, 부당원가산정 피해방지, 불공정 계약 조항 심사제도 도입, 과징금 제도 실효성 제고 등